

## [서식 예] 무고죄

고 소 장

고 소 인 성명 〇 〇 〇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: ○○○ - ○○○) 전화번호 ○○○ - ○○○○

피고소인 성명 △ △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: ○○○ - ○○○) 전화번호 ○○○ - ○○○○

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, 사실은 19○○. ○. ○. 값는 날을 20○○. ○. ○. 이자는 월○푼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금 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갚기를 독촉하자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○.



○○○,○○○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○○. ○. ○일 ○○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.

2.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 고소인을 음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년 0월 0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# 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156조
범죄성립 요 건	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 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		
형 량	· 10년 이하의 징역 · 1,5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(항고)</li> <li>・근거: 검찰청법 10조</li> <li>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</li> <li>(재정신청)</li> <li>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</li> <li>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</li> <li>(헌법소원)</li> <li>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</li> <li>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</li> </ul>		

### ※ (1) 고소권자

## 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# 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